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절차 신설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70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절차 신설 등	3
2. 상생협약 이행 불가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9
3.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등 금지	12
※ 참고자료	15
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요	15
2.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처리 절차	16
3. 생계형 적합업종 절차 진행 중 상생협약 체결 사례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그 심의·의결에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시행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 절차 진행 중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고,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합의에 따라 체결한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보완·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 등의 의무불이행으로 상생협약 지속이 어려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의3 신설).

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 등이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IV. 검토의견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절차 신설 등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며(안 제6조제4항 신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단체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② · ③ (생략) <u><신설></u>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7조의2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에 관한 사항</u> 2. ~ 4.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u>구성과 임기, 회의 및 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u>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u>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	⑤ -----<u>구성, 위원</u> <u>의 임기,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u> <u>· 보관·공개</u>-----.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 ----- ----- -----<u>심의·</u> <u>의결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와</u> <u>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u>----- ----. ----- -----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u>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한 날</u> <u>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의2에 따른</u> <u>재심의 청구가 없는 경우 생계형 적</u> <u>합업종을 지체 없이 지정·고시하</u> <u>여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4항----- ----- -----. ⑦ -----<u>제6항</u>-----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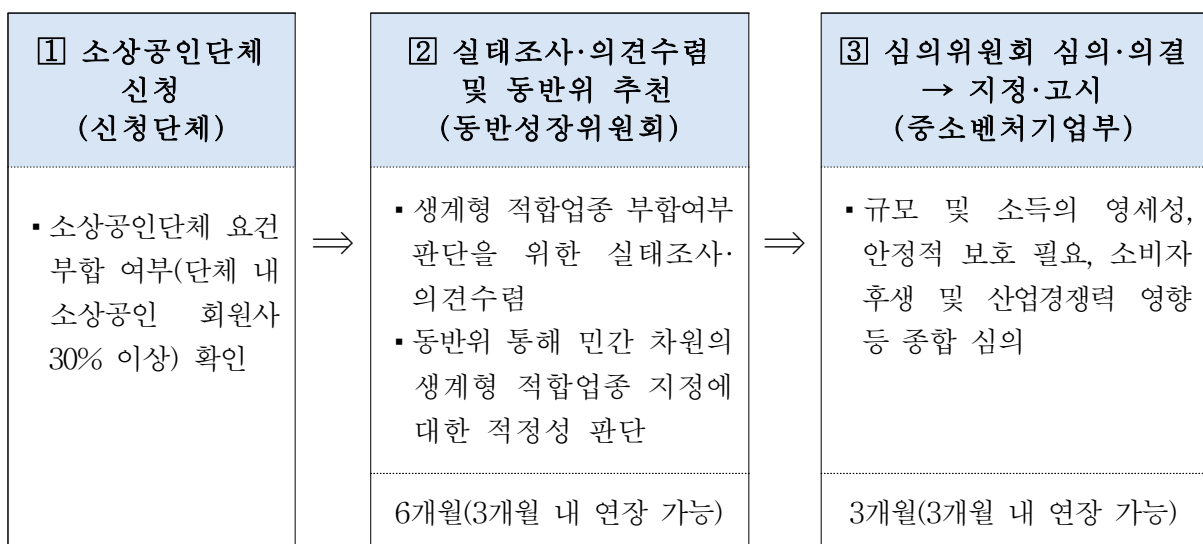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 ----- -----.
⑦ (생략) <u><신설></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u>제7조의2(재심의 청구)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u> <u>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의결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통보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③ 그 밖에 재심의 절차·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임(참고자료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현행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은 ① 소상공인단체 신청, ② 실태조사·의견수렴 및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최대 9개월 소요¹⁾),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최대 6개월 소요²⁾)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됨(참고자료 2).

[표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절차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③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추천을 요청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추천의견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 수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안 제7조의2)에 따라 재심의 청구권을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단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할 수 있고, 재심에 소요되는 최장 5개월³⁾ 동안 소상공인단체가 대기업등의 시장진입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러한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는 「건축법」, 「영재교육 진흥법」 등의 입법례가 있음⁴⁾.

3) 안 제7조의2(재심의 청구)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단체는 결정일 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심의를 청구한 날부터 3개월 이내(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함.

4)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① 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관별·심사를 의뢰하여야

참고로, 중소기업부는 재심의 청구권 보장(안 제7조의2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단순 이의신청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재심의 청구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재심의 청구권은 소상공인단체에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해당사자 중 일방인 대기업등에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및 공개(안 제6조제4항 신설)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⁵⁾에 따라 현재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⁶⁾하고 있으므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함.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① 특례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사람과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6) 심의위원회 회의의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거나 신청 단체에 미지정된 사유를 직접 통보하는 등 회의내용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임.

2. 상생협약 이행 불가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개정안은 소상공인단체가 대기업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철회(안 제7조의3 신설)하도록 하고, 상생협약 체결 이후 대기업등이 상생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생협약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재신청(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③ ~ ⑦ (생략) <u><신설></u>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생협약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u> ②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u>제7조의3(상생협약) ① 소상공인단체는</u>

현행	개정안
	<u>대기업등과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지정 신청을 철회하여야 한다.</u> 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u> ③ <u>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u>

상생협약은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등이 맺는 민간 자율협약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된 후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현행법이 시행(2018.12.13.)된 이후 현재까지 14건이 있음(참고자료 3).

한편, 소상공인단체는 대기업등과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철회하게 되는데, 이후 대기업등의 귀책 사유로 상생협약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거나 중도 파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기간⁷⁾이 경과함에 따라 별도로

7)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거나 지정된 후 1년(2025.7.22.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그 적용

권리를 구제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상생협약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안 제7조의3)하는 한편, 대기업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상생협약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안 제7조제1항제4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기간의 경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등의 협약사항 불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는 민간 자율협약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의무 불이행으로 ‘그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신청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로 그 신청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임(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3.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 등 금지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신청된 업종·품목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가 대기업등에 통보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정지하도록 대기업등에 권고(안 제11조제2항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 ----- ----- ----- -----. 1 ~ 3. (생략) <u>3의2.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u>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제7조제3항</u> 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① ----- <u>제7조제4항</u> ----- -----

현행	개정안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③ 제1항의 권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업등이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 -----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정·고시가 있을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기업등의 사업인수·개시·확장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⁸⁾. 이에 따르면,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공표, 이행명령 및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음.

문 의 처
02) 6788-5467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25.1.21.)되었음(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7.22.)부터 시행).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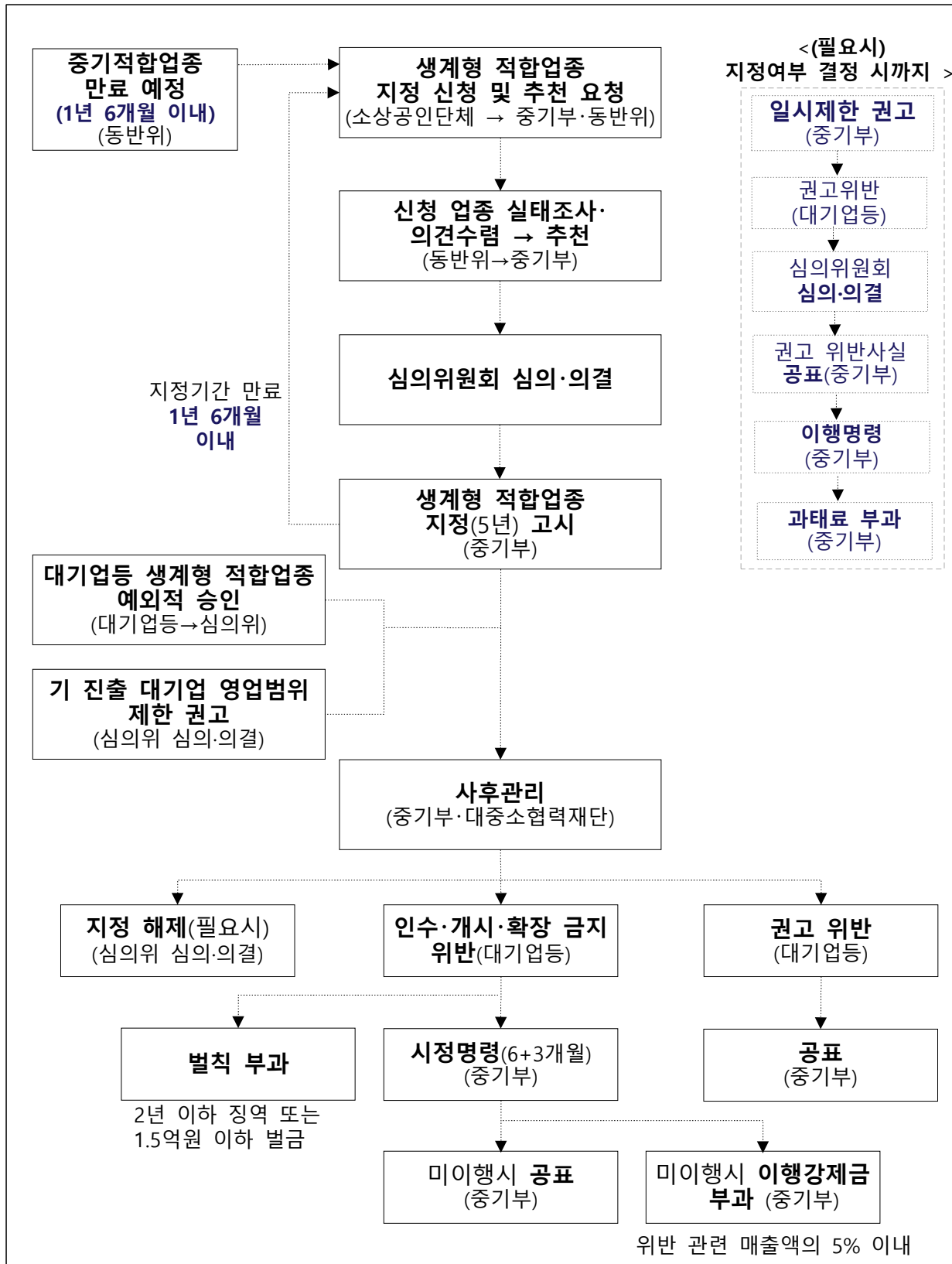
- ☐ **(제도개요)** 중기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중견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
 - * 위반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을 부과
- ☐ **(근거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18.6.12제정, '18.12.13시행)
- ☐ **(신청대상)** ①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기간 만료 1년 6개월 이내*, ②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만료 1년 6개월 이내*, ③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 기간 중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으로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 * 법률 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합의기간 및 지정기간 만료 1년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 ☐ **(규제대상)** 대기업등(중견기업 포함)
- ☐ **(지정기간)** 5년(지정횟수 제한 없음)
- ☐ **(처리절차)** 소상공인단체 신청 → 실태조사·추천의견(동반성장위원회)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중기부 내) → 중기부 지정·고시 → 사후 관리
 - * **(심의위원회)**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각 2명)과 공익위원 5명의 민간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
- ☐ **(심의기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종합 고려
- ☐ **(대기업등 진출제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며, 소비자후생·관련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사항 승인·적용(제8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진행 중 대기업등에 대한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제한 권고 가능(시행 예정)
 - * 지정고시 당시 해당 업종 영위 대기업등에게 3년 이내 영업범위 제한 권고 가능(제11조)

< 유효한 업종(9개) 및 절차 진행중 업종(1개), '25.2.1 기준 >

번호	업종	지정기간	번호	업종	지정기간
1	서점업	'24.10.18~'29.10.17	6	청국장 제조업	'25.2.1~'30.1.31
2	LPG연료 소매업	'24.11.20~'29.11.19	7	두부 제조업	* 지정절차 진행 중
3	간장 제조업	'25.2.1~'30.1.31	8	국수 제조업	'21.1.1 ~ '25.12.31
4	된장 제조업	'25.2.1~'30.1.31	9	냉면 제조업	'21.1.1 ~ '25.12.31
5	고추장 제조업	'25.2.1~'30.1.31	10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21.9.16 ~ '26.9.15

* 서점, LPG연료소매, 장류(4종)제조는 다시 지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3

생계형 적합업종 절차 진행 중 상생협약 체결 사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지정신청 이후 상생협약 14건 체결 → 신청철회로 종결

No	업종·품목명	신청단체	신청일	협약일자
1	떡류 제조업(전통떡)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19.03.28	'20.06.01
2	제과점업	대한제과협회	'19.02.27	'19.08.07
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앙금류)	한국팔류가공업협동조합	'19.03.21	'19.08.19
4	곡물 제분업(메밀가루)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19.06.05	'19.07.01
5	빵류 제조업(햄버거빵)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19.03.28	'19.08.27
6	수산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어묵)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19.03.21	'19.10.23
7	화초 및 식물 소매업	한국화원협회	'19.02.27	'20.01.15
8	막걸리 제조업	한국막걸리협회	'19.12.10	'20.08.26
9	도시락류 제조업	한국급식협동조합	'19.12.11	'20.08.12
10	기타 인쇄물(오프셋인쇄업)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19.08.09	'20.11.04
11	면류 제조업(당면)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19.12.10	'21.01.28
12	보험대차 서비스업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20.08.28	'21.03.19
13	계란 도매업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21.12.28	'22.12.23
14	문구소매업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22.07.28	'23.10.11

※ 대기업의 협약사항 미준수 사례 없음